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1가단117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4,831원 및 그중,
가.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2017. 11. 16.까지 연 6%의, 2017. 11. 17.부터
2019. 2. 13.까지 연 12%의,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 6,76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5.부터 2017. 11. 16.까지 연 6%의, 2017. 11. 17.부터
2021. 8. 11.까지 연 12%의, 2021.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다. 12,116,322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2017. 11. 16.까지 연 6%의,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라. 1) 6,701,870원에 대하여는 2022. 3. 1.부터, 2) 135,620원에 대하여는 2022. 3. 18.부터, 3)
198,765원에 대하여는 2022. 5. 4.부터, 각 2022. 5. 30.까지 연 5%의, 202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마. 702,254원에 대하여는 2022. 8. 16.부터 2022. 8. 17.까지 연 5%의, 2022. 8. 18.부터 다

앞는 날까지 연 12%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20. 1. 3.경 체결된

재산이전계약(영업양수도계약 포함)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F와 피고 사이에 2021. 5. 7.경

재산이전계약(영업양수도계약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① 원고는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커뮤니티서비스, 인터넷광고대행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② 피고는 온라인 광고대행업, 홈페이지 제작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당초 상호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2. 15.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9나31984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2021. 8. 11.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제1판결'이라고 줄여 쓴다), 이는 2021.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으로 확정된 것은 아래와 같다.

E는 원고에게 1,276만 원(= 제1심 인용액 600만 원 + 제2심 인용액 676만 원) 및 그중 제1심 인용액 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제2심 인용액 676만 원에 대하여는 2017. 7. 5.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의, 2011.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E에 대한 이 법원 2021카합7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2. 2. 17. 전항 기재 소송사건의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의하여 E가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6,701,87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제1결정'이라고 줄여 쓴다), 이는 2022. 3. 1. 확정되었다.

3) 원고의 E에 대한 이 법원 2022카합11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2. 3. 4. 이 법원 2021카단936호 가압류이의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E가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135,62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제2결정'이라고 줄여 쓴다), 이는 2022. 3. 18. 확정되었다.

4) 원고의 E에 대한 이 법원 G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2. 4. 26. 이 법원 2017카단2215 채권가압류, 2021카담230 담보취소, 2021타채132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E가 원고에게 상환할 집행비용액은 198,76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제3결정'이라고 줄여 쓴다), 이는 2022. 5. 4.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법원 2021가단132186호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1.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제2판결'이라고 줄여 쓴다), 이는 2021.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전항 기재 판결에서 전부 인용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① 위 나의 1)항 기재 인용액 12,760,000원에 관하여 F는 E와 형식상으로만 별개일 뿐 실질은 동일한 법인이므로 연대책임을 구하고, ② 추가로 12,116,322원의 간접손해에 관하여도 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F에게 그 합산액 24,876,322원[= 위 12,760,000원(= 6,000,000원 + 6,760,000원) + 위 12,116,322원] 및 그중 18,116,322원(= 위 6,000,000원 + 위 12,116,322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6,76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5.부터 각 2017. 11. 16.까지 연 6%의,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 3) 원고의 F에 대한 이 법원 2022카합31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2. 8. 2. 이 법원 2021가단132186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F가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702,25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제4결정'이라고 줄여 쓴다), 이는 2022. 8.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관련 회사 사이의 관계

-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관련된 이 사건 계쟁 회사는 앞서 본 E, F 및 H이다.
- 2) E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I이고, 피고와 F, H의 대표자는 모두 I이다.
- 3) E 는 지속적으로 부채가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앞서 본 이 법원 2019나31984호 소송계속 중이던 2020. 4. 22.경 폐업하였다.

라. 가압류 등의 경합과 집행공탁

- 1) 원고는 이 법원 2021카단858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8,654,46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9. 23. 이를 인용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 2) 원고는 이 법원 2022카합11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한 청구금액 177,920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14051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을 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22. 3. 2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22. 3. 29. 위와 같이 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예금채권액 28,644,574원을 인천지방법원 200년 금 제3027호로 집행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줄여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남인천세무서장, 연수세무서장, 남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J기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E와 F는 원고에게 앞서 본 판결 및 결정에 따른 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회사의 경영자인 I이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E와 F와 그 인적·물적 구성이 대동소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핵심자산이 양도되어 그 각 영업권 일체가 피고에게 사실상 양도된 상태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E와 F와 연대책임을 진다.

2) 피고

원고 주장과 같은 영업양수도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 경영자인 I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 다만 당장은 유동자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 또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해 가는 방식이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채권만족 방법이 될 것이므로 응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참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1)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E와 F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그 법인격이 이용된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E와 F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이와 같이 법인격 부인에 의한 피고의 책임 즉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제1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인 상호 속용 영업양수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F는 E의 위의 폐업일 2020. 4. 22. 약 3달 전인 2020. 1. 3. 설립되었고, 피고는 위 폐업 후 한 달도 채 안 된 2021. 5. 7. 설립되었는데 E, F, 피고 모두 그 주된 목적사업이 ‘어플리케이션 제작업, 솔루션개발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동일하다.

나) 앞서 본 듯 E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I이고, F의 대표자 및 피고의 대표자 모두 I이다. I은 F 및 피고의 각 설립일로부터 약 2 내지 3달 후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다) E에서 근무하던 총직원 11명 주 약 7명이 퇴사 후 설립 직후이던 2020. 1. 말경 F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또한 E의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남동구 M건물, 2, 3층’은 피고 및 F, H의 공통된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 N건물, 22층 O호’와 다르기는 하나, 대표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팩스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F의 그것과 동일하다(E의 대표이사 명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번호이고, I도 원고의 대표자 이사 P에게 (전화번호 1 생략)이 E의 대표번호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마) F는 사실은 위와 같이 2020. 1. 3.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회사소개 부분에 ‘설립일 2002년 4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위 홈페이지에 E의 ① Q협회 회원증, ②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③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④ 중소기업 확인서,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가 게시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하단에는 “F”, “R”, “E”의 명칭이 병렬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I은 원고와 E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의 대표자 P에게 “E 안에 R, F, *** (청취불능) 세 개의 관련 부서가 있고요.”라고도 말한 바 있다.

바) F의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와 피고의 대표번호 ‘(전화번호 3 생략)’는 다르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인천 연수구 N건물, 22층 O호’로 동일하고, 두 회사의 로고 모양과 팩스번호 (전화번호 2 생략)는 물론 이메일주소 (이메일 3 생략)까지도 동일하다.

사) 2021. 11. 3.경 현재 E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홈페이지 제작’ 배너를 클릭하면 피고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도 동일하다], E의 구 상호는 “주식회사 S”이다]로 연결되고, 그곳에 기재된 ‘통신판매신고번호’는 피고가 2021. 5. 7. 설립되었음에도 ‘T’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 홈페이지의 회사 소개 부분에는 E의 연혁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홈페이지의 ‘견적문의’ 게시판 글은 F(또는 C)의 ‘1:1문의하기’ 게시판과 연동되며, 피고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4 생략))의 도메인 등록인은 I이다. 피고의 직원들과 F 및 E의 직원들은 일부 다르나, 실무책임자로 보이는 D은 여전히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 한편 피고는 ‘(인터넷주소 5 생략)’이라는 도메인 주소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홈페이지의 구성에서는 회사명과 대표번호만 바뀌었을 뿐 홈페이지 형식, 내용이 F(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의 그것과 동일하다.

자) 피고, E, F의 영업방식은 앞서 본 ‘1:1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견적문의’ 게시판을 통해 고객이 의뢰하고 전화 등 연락을 통한 온라인 계약이 주된 것이다.

차) 또한 I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3. 7. “주식회사 H”를 새로 설립하고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감사 U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그 본점 소재지는 피고 및 F와 동일한 ‘인천

연수구 N건물, O호'이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도 피고 및 F의 그것과 동일하다.

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22. 4. 11.자 2022카단20798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의 집행은 2022. 4. 20.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서에서 착수되었으나 현장에서 피고 점유하는 동산은 없고 피고가 아닌 H가 그곳을 점유하고 있다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집행불능되었다.

타) 피고는 F, I, D와 사이에 계좌송금거래가 빈번하여 왔다.

파) 더욱이 피고의 위 주장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낙'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I이 변제의사가 있다는 등 위와 같은 사정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제2판결에서는 앞서 본 듯이 F는 E와 형식상으로만 별개일 뿐 실질은 동일한 법인이라는 법인격 부인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자백간주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그 각 경영자가 피고와 동일하게 I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도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 E가 2020. 1.경 V과 사이에 '사업 포괄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자산 일체를 V에게 양도함으로써 V이 2020. 1.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가 E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거나 E로부터 이전받은 영업자산도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앞서 본 홈페이지 도메인, 팩스, 대표전화 번호, 종전 직원 11인 중 7인 등을 F나 피고가 계속 보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지 이 항의 모두에서 실시한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법인격 부인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좌우하기엔 부족하다.

2) 소결

앞서 본 듯 피고를 비롯한 위 각 관련 회사의 영업방식과 사업내용, 경영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런 종류의 업체에서 홈페이지 도메인, 통신수단은 중요한 자산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 각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 등 유무형 자산에 관하여 각 관련 기업 사이에 상당한 사실상 동일성 또는 중복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정식 영업양수도 계약서의 작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각 관련 기업의 경영자인 I을 통하여 기존회사인 E로부터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인 F, 신규 회사인 피고, H 순으로 사실상의 포괄적 영업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일련의 과정에서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형해화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I이 경영하는 E와 F는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2,614,831원(= 제1판결의 6,000,000원 + 같은 6,760,000원 + 제2판결의 12,116,322원 + 제1결정의 6,701,870원 + 제2결정의 135,620원 + 제3결정의 198,765원 + 제4결정의 702,254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위 6,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판결의 기산일 2017. 8. 29.부터 제2판결의 2017. 11. 16.까지 연 6%의, 2017. 11. 17.부터 제1판결의 2019. 2. 13.까지 연 12%의,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위 6,760,000원에 대하여는 제1판결의 기산일인 2017. 7. 5.부터 제2판결의 2017. 11. 16.까지 연 6%의, 2017. 11. 17.부터 제1판결의 2021. 8. 11.까지 연 12%의, 2021.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위 12,116,322원에 대하여는 제2판결의 2017. 8. 29.부터 2017. 11. 16.까지 연 6%의,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⑦ 위 6,701,870원에 대하여는 제1결정 확정일인 2022. 3. 1.부터, ⑤ 위 135,620원에 대하여는 제2결정 확정일인 2022. 3. 18.부터, ⑥ 위 198,765원에 대하여는 제3결정 확정일인 2022. 5. 4.부터 각 2022. 5.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⑤ 위 702,254원에 대하여는 제4결정 확정일 이후인 2022. 8. 16.부터 2022. 8.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양호